

2023년도 제2차 강원도 사회복지대체인력지원센터 기간제 계약직 채용공고

<(재)강원도 사회서비스원 공고 제2023-25호>

(재)강원도 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2023년도 강원도 사회복지대체인력지원센터에서 도내 사회복지시설 돌봄공백 최소화를 위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유능한 인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인원	직위	근무지역	담당업무	지원자격
※ 필수 확인사항			○(돌봄직-상근직): (근무지역관련참고사항) 에 기재된 ②, ③순위 지역 지원 가능	
1명	대체인력 (돌봄직)	태백/삼척 (상근직)	○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공백 시 돌봄서비스 제공 ○ 급식, 간식제공 보조, 프로그램 및 교육 보조 ○ 사무행정 업무지원 등	(지원자격) ○ 본원의 인사관리 규정과 채용분야별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정년(만 60세)를 초과하지 않는 자 ○ 직무관련 자격증 보유 자 ○ 현재 주민등록 주소지가 강원도이거나, 강원도 소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를 졸업한 자 (돌봄직.대체인력풀) -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 * 자격취득 예정인 관련학과 졸업예정자 (2개월 이내 자격증 사본 제출 가능자) (조리원) - 단체급식조리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1명	대체인력 (조리원)	원주/횡성 (상근직)	○ 사회복지 시설 조리인력 공백 시 조리업무 지원	※ 대체인력풀의 경우 파견시설 수요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 시기 및 근로형태 변동 가능
30명	대체 인력풀 (돌봄직) (조리원)	강원도 전지역 (인력풀)	○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공백 시 돌봄서비스 제공 ○ 급식, 간식제공 보조, 프로그램 및 교육 보조 ○ 사무행정 업무지원 등 ○ 사회복지 시설 조리인력 공백 시 조리업무 지원	(근무지역 관련 참고사항) • 대체인력(돌봄직-상근직) 채용 예정 지역 ①순위-삼척, 태백 ②순위- 영월, 평창, 정선 ③순위-강원도 전지역(강릉, 춘천, 원주 제외) * 채용 예정 지역의 경우 채용 응시 현황과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대체인력풀의 경우 파견시설 수요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 시기 및 근로형태 변동 가능

(참고 1) 결격사유

가. 공통사항

▶ 다음의 결격사유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강원도사회서비스원 인사규정 제8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7.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10.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 사실이 있는 사람
13. 공직자 및 「공직자 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그 직원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또는 해임·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채용분야별 결격사유

▶ 다음의 결격사유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제2항)

1.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지방재정법」 제97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2항제1호,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39조제1항제1호 또는 「형법」 제28장·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제1호의5부터 제1호의7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참고2) 아래 지원자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직 위		자격기준
돌봄직		☐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 * 관련 자격증(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보육교사) 취득 후 6개월 이상 근무 경력자 우대 ☐ 자격취득 예정인 관련학과 졸업 예정자 - 채용 후 2개월 이내 자격증 사본 제출 가능 자
조리원		☐ 단체급식조리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조리업무 경력이 6개월 이상인 자 * 단체급식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인력풀	돌봄직	☐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 * 관련 자격증(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보육교사) 취득 후 6개월 이상 근무 경력자 우대 ☐ 자격취득 예정인 관련학과 졸업 예정자 - 채용 후 2개월 이내 자격증 사본 제출 가능 자
	조리원	☐ 단체급식조리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조리업무 경력이 6개월 이상인 자 * 단체급식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2. 근로조건

- 근무기간 : 2023. 4. 10. ~ 2023. 12. 31(9개월)

- 근무장소

○ 상근직 - 돌봄직(최종 채용자 거주지 배치 예정), 조리원(원주/횡성)

※ 돌봄직의 경우 기간제 근로자 채용 응시 현황에 따라 ①순위 : 삼척, 태백 ②순위 : 영월, 평창

정선 ③순위 : 강원도 전지역(춘천, 원주, 강릉 제외) 최종 채용 및 근무지역 배치 예정

○ 인력풀 - 강원도 전지역/※ 권역별 파견 예정

- 근로시간 : 상근직 8시간(09:00~18:00), 인력풀(파견수요 발생에 따라 월 근무시간 변동)

- 기본급여 : ① 돌봄직 - 월2,182천원(기본급 2,032천원, 교통비 150천원)

② 조리원 - 월2,049천원(기본급 1,899천원, 교통비 150천원)

③ 인력풀 - 상근직 종사자 기준 파견 일정에 따라 지급(※ 교통비 1일 5,000원 지급)

※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1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 보장

- 제수당 : 명절휴가비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 사업운영 지침에 따라 지급

※ 명절휴가비 등 제수당 지급 해당자 : 상근직(8시간/4시간 근무)인 대체인력

3. 전형별 일정

추진절차	일 정	결과발표	기타사항
채용공고	2023. 3. 17(금)	-	
지원서 접수	2023. 3. 17.(금)~3. 27.(월)	-	-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서류전형	2023. 3. 28.(화)	2023. 3. 30.(목)	- 홈페이지 공고 및 지원자 개별 안내 - 제출 증빙서류 안내
면접전형	2023. 4. 3(월)	2023. 4. 5.(수)	- 제출 서류검증 및 면접
신체검사 및 결격사유조회	2023. 4. 5.(수)~4. 7.(금)	-	
임용예정일	2023. 4. 10.(월)	-	

※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상황에 따른 일정 조정 등 추가 안내사항 및 합격자 발표는 강원도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 통해 공지 예정

※ 전형별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가능하며 변경시 공지 예정

※ 면접당일 기본자격, 우대사항, 자격 등을 증빙하기 위한 증빙서류가 반드시 확인되어야함
(현장 미제출시 기본자격, 우대사항, 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며, 자격조건 미충족시 불합격처리)

※ 면접시험 참석 시 신분증 반드시 지참

※ 블라인드 채용을 위하여 작성시 연령, 성별, 출신지역, 출신학교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바라며, 노출 시 불합격 처리

4. 전형별 절차

○ 전형별 개요

전형단계	내용 및 기준	선발인원	비고
서류전형	- (적/부) 기본 자격요건 충족 여부 - (정성/정량) 자격 및 경력사항 자기소개서 등 - 입사지원서 등 불성실 작성자 불합격 * 공란, 동일기호 반복 등		블라인드 채용으로 연령, 성별, 출신지역, 출신학교 등 노출시 부적격처리
면접전형	- 면접위원별 질의응답식 심층면접	1배수 이내	- 면접전형 합격자 선정기준 참고

○ 서류심사 부적격 기준

구분	심사기준
연 령	· 만 18세 미만 또는 만 60세를 초과한 사람
병 역	· 남성인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가 아닌 사람
지역제한	· 강원도 소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를 졸업하지 않았거나 · 주민등록 주소지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
자격기준	· 공고기준 자격 및 경력 기준 미달인 사람(해당자)
기타사항	· 응시원서 필수항목을 기재하지 아니한 사람 · 자기소개서 분량이 기준범위에 미달하거나 불성실하게 작성한 사람

5. 지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 지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3. 3. 17(금)~3. 27.(월)
- 제출방법 : 이메일, 방문, 우편접수

1. 이메일 주소: (mek0645@gangwon.pass.or.kr)
2. 우편 또는 방문접수: 강원도 춘천시 외솔길 25, 강원도 사회복지대체인력지원센터
※ 단, 토요일 및 일요일은 방문접수 불가하며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 제출양식: 입사지원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 블라인드 채용을 위하여 작성시 연령, 성별, 출신지역, 출신학교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바라며, 노출 시 불합격 처리
2. 지원서 경력 기재사항과 제출서류(증빙서류)의 불일치시(미 제출포함) 불합격 처리
3. 입사지원서는 반드시 채용공고 내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작성

○ 제출서류

구분	대상	제출서류	제출기한
입사지원	모든응시자	① 입사지원서 1부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지원서접수 기간 내
증빙서류 접수	서류합격자 (면접대상자)	①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명서(해당자에 한함) 각 1부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증빙 필요 - 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함 ② 가산점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각 1부	면접당일
최종 입사서류	면접합격자 (입사예정자)	① 기본증명서(상세) ② 채용신체검사(확인)서 ③ 최종학력증명서 1부 ④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13자리 표시) ⑤ 가족관계증명서(등록기준지 포함) ⑥ 경력증명서(해당시) ⑦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직장가입내역만 발급) ⑧ 서약서 및 각종동의 각 1부(출근당일 작성) ⑨ 통장사본, 증명사진(JPG파일)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개별 안내

1. 증빙서류는 입사지원서 작성 내용에 대한 진위여부 확인용으로, 지원서 기재사항과 제출서류의 불일치, 지원서 허위작성 또는 증빙서류의 위·변조 판명시 불합격처리
2. 경력인정 기준일은 채용공고일이며 경력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또는 고용보험 가입이력확인서)에서 모두 확인되는 기간에 한하여 인정함
3. 경력증명서에는 근무처, 부서, 직위, 근무기간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며, 근무처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서류여야함
4. 폐업으로 인해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폐업한 근무처에 대해 기재된 사실증명(전국세무서에서 근무사실 확인 후 발급 가능)을 경력증명서 대신 제출해야함
5. 채용신체검사(확인)서의 경우 공고일 기준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급 받은 서류여야 함
6. 경력증명서, 자격증 또는 면허증, 채용신체검사(확인)서 외 증빙서류는 면접전형 실시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받은 서류여야함

6. 면접전형

○ 면접심사 방법

- 대상자: 서류전형 합격자
- 일시·장소: 2023. 4 3.(월) ※시간 및 장소는 면접대상자에게 별도 공지
- 면접전형 방법: 면접위원별 질의응답식 심층면접(블라인드 방식)
- 심사항목

계	업무이해도 (직무관련사업 이해 정도, 역할 인식, 중요성 인식)	의사표현 및 태도 (지원동기 및 포부, 문제해결능력, 소통능력)	직무 전문성 (관련 실무 경험, 전문지식 함양, 직업 윤리관)	기타 (그 외 채용 우대사항 등 기타)
100점	30점	30점	30점	10점

- 채점방법

- ① 응모자 1인에 대한 위원별 평가점수는 100점만점으로 하고, 위원별 점수는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산술평균함
- ② 전체위원의 평균점수가 60점 미만인 응시자는 과락(가산점 미포함)
- ③ 동점 발생시 면접점수를 합계한 점수가 높은 자 선정
- ④ 만약 면접 심사 당일에 외부위원의 기피사유가 발생할 경우 '제척위원 확인서' 작성 후 해당 응시자의 심사에서 제외하며, 기피위원의 평정값은 다른 위원들의 평정결과 평균값으로 대체

- 가산점 부여

- ① 유리한 가점 1개만 인정(중복적용 불가)
- ② 공고일 전 지정자, 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해 가점 인정
- ③ 위원별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인 자에 한하여 가산점 부여

구분	가산비율	가산대상자
취업지원 대상자 (차상위 등)	면접전형 만점의 3%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주
장애인	면접전형 만점의 5%	•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제3조(장애인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취업지원 대상자 (보훈 등)	면접전형 만점의 5% 또는 10%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1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5조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2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24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 취업지원대상자가 가점을 받아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직종(직렬)별 선발 예정인원의 30%를 초과 할 수 없음

7. 최종합격자 순위결정

○ (최종합격자)

- 전체위원의 평균점수와 가산점을 합산한 최종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채용인원의 1배수 이내 선발

○ (예비합격자)

- 위와 동일조건에서 최종합격자를 제외하고 채용인원의 2배수 이내 선발 가능 단, 최종합격자와 평균점수 차이가 10점 이하일 경우만 예비합격자로 선발

8. 기타유의사항

- 우리 원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편견요인에 대한 개인정보는 기재할 수 없으며, 기재 시에도 심사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상황에 따라 채용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사지원서 접수 시 응시자격요건 및 작성요령을 반드시 숙지하고 지원서 제출 전에 자격증 등 각종 기재사항을 정확히 확인하여 잘못된 기재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작성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공고내용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책임이며, 특히 경력기록사항과 경력증명서상 내용이

다르거나 경력기록 후 경력증명서를 미제출하는 경우, 면허증 또는 자격증 기록 후 관련 자격 증빙자료를 미제출하는 경우 불합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입사지원서 접수마감 후에는 기재내용을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없습니다.
- 제출한 각종 증빙서류는 관계기관에 진위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며, 모든 지원자의 진위여부 조회에 필요한 개인정보제공은 사전 동의하에 진행됩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채용분야별로 책임자가 없을 경우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임용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6개월 이내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 예비후보자 순위에 따라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최종 합격되지 않은 응시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제출한 서류(온라인 입사지원서 및 첨부제출 자료 등은 해당되지 않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채용확정 이후, 14일 이내 반환 청구 시 본인확인 후 반환(확정자 제외) 하며, 반환시 우편송달료는 반환요청자가 지불합니다. 또한, 반환 청구기간이 지났거나,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합니다.
- 강원도 사회서비스원은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문화 정착을 위해 인사 청탁을 금지합니다. 채용과정에서 부당한 인사 청탁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 및 재단 규정 등에 따라 불합격처리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 강원도 사회복지대체인력지원센터 업무담당자(033-248-5719)

2023년 3월 14일

[재)강원도 사회서비스원장